#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용역 계약서(특수조건)

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공사장 등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를 운영함에 위탁자인 강남구청장을 "계약당사자", 수탁자인 민간위탁용역업 체를 "계약상대자"라 칭하며 "계약당사자"와 "계약상대자"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계약은 강남구 관내의 소음 등을 적정하게 관리·규제함으로써 구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갖춘 민관합동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함에 있다.

#### 제2조(관리업무의 범위)

- ① "계약상대자"가 "계약당사자"와 계약하여 수행할 수 있는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범위는 아래와 같다.
  - 1. 소음발생 사전예방
  - 2. 민원발생예상 공사장 반복 순찰 및 지도점검
  - 3. 민원발생시 소음측정 및 기록 유지 등 단속업무 제반사항
  - 4. 먼지발생 사진촬영 및 법규위반사항 확인기록 등
- ② 용역업무 내용에 대하여 "계약당사자"와 "계약상대자"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그 내용에 따라 업무내용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.

#### 제3조(계약기간)

- ① 용역업무의 계약기간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까지(365일, 12개월)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에 대하여 "계약당사자"와 "계약상대자"간에 이견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그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- ③ 2016년도 계약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업체가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금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도 금액산정 방법에 의한다

#### 제4조(특수계약)

소음먼지 관련 용역 업무에 대한 "계약당사자"와 "계약상대자"의 특수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다.

- 1. "계약상대자"는 소음먼지 용역근무자 4명에 대하여 "계약상대자"의 정규직원이라는 것을 착수 전일까지 "계약당사자"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[단,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운전면허증(보통 2종 기타)소지자로 신체 건강한자 4명을 상주 투입하여야 한대.
- 2. "계약상대자"는 소음민원 예방 및 단속업무의 원활하고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차량 (일반승용차2대, 1,600cc이하, 주행거리 30,000km이내)을 투입하여야 하며, 유류비를 제외한 차량관련 기타비용은 "계약상대자"가 부담한다.
- 3. "계약상대자"는 용역근무자가 용역수행으로 인한 신체상, 재산상 손해발생 시에는

- "계약상대자"의 책임 하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4. 용역근무자는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장소로 출근하여 출근사역부에 날인하고 용역지시를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한다.
- 5. 용역근무자는 함께 편성된 조원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차량운전을 병행하여야 한다.
- 6. 용역근무자는 공사관계자 및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용역업무 수행 시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에 즉시 보고 및 지원요청을 하여 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긴급사태를 해결하도록 한다.

#### 제5조(운영방법 및 시간)

- ① "계약상대자"는 구청직원 등과 함께 편성된 다른 조원들과 권역별로 공사장을 순회하며 소음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시 단속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"계약상대자"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.
  - 1. 평일 및 토요일 : 09:00 ~ 18:00
  - 2. 단, 공무원근무시간 외(야간(토요일 포함), 새벽, 일·공휴일)에는 교대로 근무하여 1개 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이 끝난 후 24시간이상 휴무를 하게 한다.
- ③ "계약상대자"는 계약기간중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
## 제6조(보고 등)

"계약상대자"는 소음분진 계도 및 단속실적을 당일 업무 종료 시 "계약당사자"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7조(준수사항 및 사고에 대한 책임)

- ① 용역근무자는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행과 용모에 공무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등 선량한 업무수행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② 용역근무자는 과업수행 중 주민 또는 공사관계자가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더라도 소극적 방어 이외의 대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용역근무자가 소음분진예방 및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민,형사상 문제(사건)에 대하여 "계약상대자"가 책임지고 처리한다.

#### 제8조(양도·양여 금지)

"계약상대자"는 소음분진에 관한 예방 및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"계약당사자의"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·양여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#### 제9조(지도감독)

"계약당사자"는 "계약상대자"와 협의하여 "계약상대자"에게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를 수행 시킴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- 1. 용역업무 이행사항 확인 감독
- 2. 소음분진예방 및 단속업무의 지도
- 3. 소음분진예방 및 단속업무와 관련한 피해보상 민원처리 명령
- 4.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

#### 제10조(교육 등)

"계약당사자"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사항이 있을 시 "계약상대자"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은 교육자료 또는 서면통보로써 갈음한다.

- 1. 소음먼지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
- 2. 기타 계약내용 변경사항

#### 제11조(해지권의 유보)

- ① "계약당사자"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"계약상대자"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"계약당사자"와 "계약상대자"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
  - 2. "계약당사자"가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
  - 3. 관계법령의 개정, 폐지 또는 소음민원기동반 해체로 계약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
  - 4.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
  - 5. "계약상대자"가 관계법령, 조례 및 본 계약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용역사업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
-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"계약상대자"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금 반환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.

# 제12조(관계법령적용 등)

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"계약당사자"의 해석에 따른다.

# 제13조(계약서 작성 등)

본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"계약당사자", "계약상대자"가 확인 및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## 2014년 12월 일

계약자 "계약당사자"(위탁자) 강 남 구 청 장 신 연 희 (인)

"계약상대자"(수탁자) (주)민간용역업체 대표자(인)